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1회)

1. 일반현황		발주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명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2지구) 조정공사			
계약방법		계속바공사		계약자	삼성물산 주식회사				
		총공사 계약 현황		시공중인 공사 계약 현황					
계약월량	계약일	2019년07월25일	계약금액	7,341,400,000 원	계약일	2019년07월25일	계약금액	7,341,400,000 원	
	착공일	2019년07월25일	준공예정일	2023년07월23일	착공일	2019년07월25일	준공예정일	2023년07월23일	
물가변동 조정현황	조정 횟수	조정 방법	1회		2회		3회		
		조정 기준일	지수조정					4회	
	조정률	조정률	3.23%						5회
		조정금액	95,776,000 원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				입찰일(동락요건 기준시점): 2019년 07월 03일		최초계약일(기간요건 기준시점): 2019년 07월 25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2020년 12월 31일	
물가변동 조정률 [A] (동락요건)	3.23%	물가변동 경과기간 (기간요건)	524 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원재의 공정률	조정률(K)산출 비용제외금액 [C]	4,376,197,000 원	[붙임6-2] 참조: MAX(예정,실행)×PS	조정률(K)산출 비용대가 [D] (D = B - C)	2,965,203,000 원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B1]	7,341,400,000 원								
조정금액 산정 비용제외금액 [C]	4,376,197,000 원								
물가변동 동락금액 [E] (E = D × A)	95,776,000 원								
물가변동 조정금액 [G] (G = E - F)	95,776,000 원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첨부서류			
번호	첨부 서류명	부수	비고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총괄표		붙임 2 참조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붙임 3~11 참조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 및 필수 제출자료		붙임 12, 13 참조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종합의견

위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첨부자료의 내용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일) 및 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변동 기초자료의 내용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제반 법규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률을 검토한 바 3%이상 상승하였으며, 물가변동 경과 기간도 90일 이상 경과한 것을 확인하고, 귀 기관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출합니다.

2021. 09.

[붙임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1회)

- 발주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사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2지구) 조정공사

■ 물가변동 경과기간 : 524일 [최초계약일(기준시점) : 2019년 07월 25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20년 12월 31일]

구분	검토내용	비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7,341,400,000 원	·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조정금액산정 제외금액)	공정률에 의한 적용제외(a)	· [붙임6-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근거 참조 - ㉞를 감안하여 산출 - MAX(예정, 실행, 기성)
	P·S (b)	
	합계 (a+b)	
	4,376,197,000 원	4,376,197,000 원
②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공정률	59.61 %
	실행공정률	59.61 %
	기성수급률	58.29 %
		· 예정 및 실행공정률 참조
②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실행공정률	59.61 %
	기성수급률	58.29 %
		· 지연 및 실행공정률 내용 반영
		· 조정신청일 현재 누계기성수급액 기준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D')	2,965,203,000 원	· D' = (B - C')
④ 물가변동 조정률(A)	3.23 %	· [붙임3] 지수조정률 산출표 참조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B)	95,776,000 원	· E = (A×D'), 천원 단위미만 절사
⑥ 선금금 공제금액(F)	없음	· 선금금 공제액 없음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95,776,000 원	·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E - F)

주) 1.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산출 참고자료

가)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현재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지연공정률을 제외한 예정공정률의 공정률과 실행공정률 중 높은 공정률을 기준으로 이 행이 완료되어야 할 공종의 공사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물가변동 대상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금을 수령한 금액은 선금금 비율만큼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3. 물가변동 조정 대상공사가 2건 이상인 경우 해당금액은 별지에 작성하여 그 합계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